



업무협약서

삼성전자 주식회사(소관:창의개발센터, 이하 “C-Lab” 이라 한다)와 한국콘텐츠진흥원(소관: 기업·인재양성본부)은 콘텐츠 관련 C-Lab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

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스타트업/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삼성전자 C-Lab 과제를 연계하여 교육, 사업화 등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사항)

양 당사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.

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

1.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
2. C-Lab 과제 및 C-Lab 스피노프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멘토링 협조
3. C-Lab 과제 및 C-Lab 스피노프사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검증 협조
4. C-Lab 과제 및 C-Lab 스피노프사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프라 사용 협조

② C-Lab의 역할

1. C-Lab 과제 포트폴리오 공유
2. 협업 기간 동안 대상 C-Lab 과제 콘텐츠의 제공 협조
3.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멘토링 협조
4. C-Lab 서울대 연구소 인프라 사용 협조

제 2 조의 2 (비용 및 지식재산권)

- ① 본 협약 제 2 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에 의한 협력 과정에서 개발된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, 규격, 자료, 기술 및 KNOWHOW 등과 관련한 특허권, 저작권,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영구적으로 실제 개발을 담당한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며,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항목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공동으로 귀속된다.





제 3 조 (협약 기간)

-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.

제 4 조 (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)

- ① C-Lab 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일체 및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- ② C-Lab, 한국콘텐츠진흥원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전 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직·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본 협약서의 내용 및 향후 진행사항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경우 반드시 상호 합의 하에 일정, 보도내용, 매체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본 협약서 체결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 회에 한하여 본 협약에 관한 업무협약 경영공시를 할 수 있다..

제 5 조 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

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 6 조 (기타)

- ① 본 협약 기간 내에 제 2 조에 따라 향후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.
- ② 본 협약 기간 중에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사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다.

제 7 조 (불가항력)

천재지변, 폭동, 전쟁, 소요사태,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의 명령, 법원의 판결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협약의 해지)

본 협약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·해지가 가능하다.





제 9 조 (해석 및 합의관할)

-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. 단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기초한 합의로 해결하되, 해결이 어려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0 조 (신의 성실)

- ① 본 의향서와 그 내용을 합의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“C-Lab”, “한국콘텐츠진흥원”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- ② 본 협력과 관련한 모든 대외발표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사전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.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이 상호 협의 하에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 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 년 8 월 10 일

"한국콘텐츠진흥원"

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, 1층 (빛가람동)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김영준 (인)

등록번호 270171-0012826



"삼성전자"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(매탄동)

삼성전자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기남 (인)

등록번호 124-81-00998

